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9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허종식 · 이연희
신영대 · 이수진 · 임미애
윤후덕 · 윤준병 · 박해철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글로벌 해커 조직들이 반도체,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해킹하여 간접적으로 산업기술을 침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,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산업기술 침해가 우려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어 보안의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,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보

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22조 등).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 신고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의 신고”로, “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”를 “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인지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협력업체(대상기관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물품·용역을 공급하거나 대상기관과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)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다)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② 정부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4조제4호 중 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”를 “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”로 한다.

제35조제3호 중 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”를 “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6호 중 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”를 “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해사고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산업기술 침해신고 등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(산업기술 침해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</u> <u>상기관의 협력업체(대상기관에</u> <u>국가핵심기술 관련 물품·용역</u> <u>을 공급하거나 대상기관과</u> <u>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하</u> <u>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</u> <u>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자를 말한다)는 「정보통신망</u> <u>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</u> <u>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</u> <u>침해사고(이하 “침해사고”라 한</u> <u>다)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</u> <u>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</u> <u>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</u> <u>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</u> <u>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14조에</u> <u>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</u> <u>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</u>	③ ----- ----- <u>제1항 및 제</u> <u>2항의 신고</u> ----- <u>제1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제2</u> <u>항에 따른 침해사고를 인지한</u>

하여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한 경우에 그 결과를 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 ① (생략)

<신 설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

경우-----

④ -----

-----제3항-----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정부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보안시스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등 침해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령령으로 정한다. 제34조(비밀유지의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~ 3의3. (생략) 4. <u>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</u> 5. ~ 10. (생략) 제3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. 1.·2. (생략) 3. <u>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</u> 4. ~ 6. (생략) 제3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	-----. 제34조(비밀유지의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의3. (현행과 같음) 4. <u>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</u>----- ----- 5. ~ 10. (현행과 같음) 제3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)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15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</u>----- --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제39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
--	---

다. 다만, 제4호의 경우에는 국 가를 제외한다. 1. ~ 5. (생 략) 6. <u>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</u>를 하지 아 니한 자 7. (생 략) ② (생 략)	-.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신고</u>----- ---- 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